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시스템 고도화

나. 사업비 : 1,545백만원(리스·조달수수료 포함)

다. 구축기간 : 계약 후 150일 이내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2(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구축예정 시스템은 연간 450건 이상의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시험에 필요한 측정시스템이며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긴급 발주로 요청함

다. 공고기간* : 1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